

**특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소 색인집을 공표한 것은
개인적인 생활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

적용법조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판결요지

일반적인 인격권의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적인 생활 관계의 공표에 있어서 자기결정에 대한원칙적 권리이다. 어떤 피해자의 개인적인 주소가 유명인사의 친필 색인집에 포함되어 공표되었다면, 이는 앞서본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된다.

Hamburg 지방법원 1995. 9. 29. 판결

-324 ○387/95 사건 -

사실관계

당 재판부는 이 사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개인적인 주소를 스스로 공표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공표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 시키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질서벌을 부과할 것이라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는바, 쌍방 당사자는 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인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라는 방송프로그램으로 TV 시청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영화배우(여성)이다. 반면 이 사건 피신청인은 『Fa. I』이라는 회사의 공동 소유자이고, 이를 비롯하여 『V.I.P 자필잡지』라는 잡지의 공동발행인이다.

피신청인은 『SAT1-Video text』를 통하여 방송하기 위해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Fa. A. 출판주식회사에 넘겨주었다.

1995년 8월 23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SAT 1-Video text』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공표하였고 신청인은 이를 확인하였다.

이 주소는 Munchen의 전화번호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주소는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색인집인 『Scholz filmfernseh ABC』에서는 찾아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주장의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즉, 피신청인은 그의 일반적인 재판적이 Marburg/Lahn에 있기 때문에 Hamburg 지방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지고있지 않다. 본건에 있어서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독일민사소송법 제 32조에 의한 관할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 문제된 주소는 『Scholz filmfernseh ABC』에 공표되어 있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해당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 개인주소의 공표는 적법한 것이다. 정보에 관련된 자기 결정 권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BVerfG NJW 1984, 419ff). 일반적으로 획득될 수 있고 또한 사회적인 의사소통에 필수 불가결한 정보들은 어떤 개인의 무제한적인 지배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공중에게 공표될 수 있는 것이다.

판결이유

가처분 이의에 대한 변론의 결과로서, 이 사건 가처분은 그대로 인용되어야만 한다.

독일민사소송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서 Hamburg 지방법원은 토지관할권이 있다. 피신청인이 『SAT 1-Video text』를 통하여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공표한 행위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SAT 1-Video text』는 Hamburg에서도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Hamburg는 독일민사소송법 제 32조에서 말하는

재판적에 해당되는 것이다(nur Vollkommer in Zoller, ZPO, 18. Aufl. §32 Rd.- Nr. 17, Stichwort 「pressedelikt」 참조).

신청인이 주장하는 중지청구권은 독일민법 제 823 조 제 1 항 및 제 1004 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허용된다. 즉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공표하는 것은 현존하는 반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하게 신청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인격권의 보호법익으로서는, 개인적인 생활 관계를 공표함에 있어서의 자기결정권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즉 개개인은 원칙적으로 그 스스로가 그 개인의 정보를 일반공중에게 알릴 것인지 여부, 그리고 언제 또한 어느 범위에서 이를 알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B VerfGE 65, 1 <41ff.>; BGH Vers R1981, 434 참조). 그러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의 비중을 서로 비교 · 형량하여, 기대 가능한 한계가 지켜졌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일반 개개인은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다(BVerfGE 65, 1 <43ff.>;BGH VersR1991, 434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익형량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공표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1990. 11. 13.자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VersR1991, 433)에 있어서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는 반대로, 이 사건 신청인의 개인주소는 전화번호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Scholz filmfernesh ABC』 라는 색인집에만 등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Scholz film fernseh ABC』 색인집의 목차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색인집은 영화 및 TV 분야의 관련자들의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지 일반대중을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위 주소는 누구나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원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영화, TV 분야의 관련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청인의 개인주소를 얻기 위하여 위 색인집을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개인주소의 공표는 소위 「민감한」 정보에 관련된 것이다. 즉 신청인은, 예를 들면 달갑지 아니한 방문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기 위하여 그 외 개인주소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 주소를 공표하여도 좋을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필중개의 목적을 위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청인의 대리인의 주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